M - 97 - 2012

분상 · 입상 저장물의 저장설비 기술지침

2012. 6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ㅇ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 건 남

ㅇ 개정자 : 안전연구실

# ○ 제·개정경과

- 1994년 07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
- 1996년 04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
- 2001년 11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
- 2007년 06월 기계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
- 2007년 08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
- 2012년 4월 기계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## ㅇ 관련규격 및 자료

ISO 8456(Storage equipment for loose bulk materials-safety code)

-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 제4절 제325조 (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)
- 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6 월 20 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분상·입상 저장물의 저장설비 기술지침

# 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3장 제4절 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)의 규정에 따라 분상이나 입상 형태의 저장물(이하 "저장물"이라 한다)을 저장하는 저장설비에서 발생하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저장설비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분상·입상 형태의 저장물을 저장하는 설비인 호퍼, 사일로 및 저장고 등의 설계, 제작, 설치, 운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가연성 분진"이라 함은 직경 420  $\mu$ m 이하(40 mesh 표준체 통과)의 미세한 분말상의 물질로 적절한 비율로 공기와 혼합될 때 점화원에 의해발화될 수 있는 분진을 말한다.
  - (나) "분진폭발압력방산구(Dust explosion vent)"라 함은 분진폭발로 인한 압력 상승시 분진 및 연소물을 설비외부로 분출시키기 위하여 설치하 는 문, 창문, 판넬 등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 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4. 안전기준

M - 97 - 2012

## 4.1 설계 및 제작

## 4.1.1 일반사항

- (1) 설비의 가동 시 예상되는 하중조건(자중, 저장물, 구조물과 기계장치 및 과부하 운전 등), 기상조건, 지형조건 및 하중계수(정하중 및 동하중)를 고려하고, 하중조건에 적합한 안정도를 갖도록 설계한다.
- (2) 저장물을 이송설비로 운반하는 장소에서는 이송설비와 구조물 사이에 다음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작업을 하지 않거나 이동 가능한 구조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(가) 크기가 300 mm 미만인 고정되고 격리된 구조물(기둥, 지주, 건물의 모 서리 등)과 이동설비간의 최소거리는 500 mm
  - (나) 크기가 300 mm 이상인 기둥, 지주와 연속되고 고정인 구조물(벽, 창고, 선창, 건물 등)과 이송설비간의 최소거리는 700 mm
- (3) 호퍼(Hopper)와 사일로(Silo), 특히 경사진 벽, 배출구의 위치 및 크기 등은 저장물의 특성에 맞추어 설계함으로써 중력에 따른 저장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며, 저장설비 내부에 설치되는 받침대, 사다리, 기타 설비 등은 재료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.
- (4) 저장설비에는 필요한 방화설비들을 갖춘다.
- (5) 저장설비에 저장된 저장물의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위험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온도감지 시스템을 설치한다.
- (6) 마식(Erosion)과 부식(Corrosion)여유를 고려한다.
- (7) 저장물이 가연성 분진으로서 저장, 취급 등으로 인하여 화재·폭발의 위험 이 있을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# 4.1.2 폐쇄 저장설비

(1) 폐쇄 저장설비의 점검창 및 열리는 부분은 시건장치를 사용하여 잠글 수

# KOSHA GUIDE M - 97 - 2012

있는 구조로 한다.

- (2) 저장물의 적재 및 반출 또는 저장물 자체의 변화에 의하여 저장설비 내에 압력변동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압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.
- (3) 저장설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.
- (4)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혼합물을 생성할 수 있는 물질을 저장하는 설비는 분진폭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KOSHA Code D-34-1999 (분진폭발 압력방산구 설계지침)에 따라 분진폭발압력 방산구를 설치한다. 다만, 유효한 화염방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 4.1.3 개방 저장설비

- (1) 상시 사용하기 위한 저장설비 중 상부가 개방되고 작업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는 다음에 적합한 추락방지용 설비를 설치한다.
  - (가) 그레이팅(Grating)이나 와이어메시(Wire mesh)를 사용하여 수평으로 개방부를 덮을 경우에는 1 m 높이에서 사람이 추락했을 때의 충격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.
  - (나) 그레이팅이나 와이어메시의 틈은 200 mm 이하로 할 것.
  - (다) 난간을 설치할 때는 상부난간대, 중간대, 난간기둥을 가지는 구조로서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980 N(100 kgf)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하며 90 cm 이상 120 cm 이하의 높이로 설치할 것.
  - (라) 차량으로 저장물을 공급하는 저장설비의 개구부가 차량운행 바닥면과 같을 때에는 차량이 접하는 부분은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차량 이 개구부에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.
  - (마) (라)의 경우 차량이 없을 때에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별도의 설비를 갖출 것.
  - (바) 입자상태의 분진을 저장하는 설비의 내부 작업 시는 저장물의 붕괴 등

# KOSHA GUIDE M - 97 - 2012

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것.

(2) 점검창, 열리는 부분 및 추락방지용 설비를 갖춘 개구부 등은 시건장치를 사용하여 잠글 수 있는 구조로 한다.

# 4.1.4 공기압 이송 저장설비

- (1) 공기압 장치에 사용되는 설비의 각 부분은 최고사용압력 또는 진공상태를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.
- (2) 가압방식으로 이송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압력보다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진공방식으로 이송시키는 경우에는 허용진공보다 과도한 진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공기압 이송 또는 유동시스템을 갖고 있는 저장설비는 동하중을 고려하여 야 한다.

#### 4.1.5 게이트

- (1) 운반물의 흐름을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으며 다시 개방하였을 때에 운반물이 규칙적으로 계속 흐르기 시작할 수 있도록 운반물의 특성에 따라 게이트가 설계되어야 한다.
- (2) 게이트는 돌발적으로 열리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
- (3) 수동조작 게이트는 작업자의 조작력이 196 N(20 kgf)를 넘지 않아야 한다.
- (4) 공기압 장치를 가지고 있는 저장설비의 게이트는 최고사용압력 또는 진공 상태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저장물이 새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

## 4.2 장치 및 설비의 설치

## 4.2.1 일반사항

- (1) 저장설비에 운반물을 자동으로 적재할 때에는 정해진 적재량에 도달 시자동으로 적재를 멈출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.
- (2) 가스, 분진 또는 위험혼합물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안전조치를 한다.
  - (가) 밀폐 등 통제할 수 있는 운전방법 사용
  - (나) 국소배기장치 등 위험물의 발산방지
  - (다) 위험원에 접근금지 조치
  - (라) 보호의와 호흡용보호구 지급
- (3) 가스, 분진 또는 폭발성 혼합물 등에 의하여 폭발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도록 KOSHA Code D-6-2002(분진폭발방지에 관한 기술지침)에 따라 다음의 안전조치를 한다.
  - (가) 폭발 분위기 생성 방지
  - (나) 점화물질 접근 엄금
  - (다) 폭발압력 방호시스템 사용
  - (라) 폭발압력 방출장치 설치
  - (마) 폭발억제 방법 적용
- (4) 가연성 분진 등을 저장 취급하는 설비가 설치된 장소는 KOSHA Code E-18-2006(분진폭발위험장소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)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를 설정하고, 위험장소 종별(20종, 21종, 22종)에 적합한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,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5) 근로자가 저장설비 내로 떨어지거나 저장물에 묻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, 특히 효과적인 보호장치 없이 저장설비 내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.

M - 97 - 2012

- (가) 저장물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설계
- (나) 저장물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설비 설치
- (다) 출입구 등에 시건장치
- (라) 윈치(Winch) 설치
- (6) 4.1.1(2)항에 규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  - (가) 이송설비가 고정된 경로(예를 들면 트랙이나 레일)를 따라 움직일 때에는 고정된 경로는 요구되는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.
  - (나) 이송설비로 조종장치가 달린 차량을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속된 축대, 바퀴받침대 등을 설치한다.
- (7) 제품의 최대 적재선 아래에 위치한 안전 개구부는 내부로 열리는 구조로 한다.
- (8) 공기압으로 적재 및 반출하는 저장설비에 위험가스를 사용하거나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공기압 컨베이어 설치 시 가스 배출장소는 안전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.

#### 4.2.2 게이트의 설치

게이트는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 모두 쉽게 구동이 가능하여야 하며, 게이트 밑에서 차량으로 직접 적재하는 경우에도 게이트를 조종하는 근로자에게 어떠 한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## 4.2.3 설비의 표시

모든 구동장치 및 단위설비는 다음의 내용을 작업장 주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한다.

- (1) 제작자명 및 주소
- (2) 제작 년월일 및 제작번호

M - 97 - 2012

## 4.2.4 보도, 계단 및 제어실

보도, 계단 및 제어실에 따른 안전장치는 시험 전에 설치하고 검사 되어져야 한다.

## 4.3 운전 및 유지관리

## 4.3.1 일반사항

- (1) 저장설비는 안전에 대한 확인 없이는 당초 설계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, 저장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2) 저장물이 과다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어장치를 설치하며, 작업장 주위의 잘 보이는 곳에 작업지침을 게시한다.
- (3) 작업자는 안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공급지점이나 공급량을 변화시켜 서는 아니 된다.
- (4) 사일로나 호퍼에 직접 투입되는 컨베이어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.
- (5) 지정된 운전자에 한하여 설비의 가동이나 운전변경을 하도록 하고, 운전자의 지정은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
- (6) 운전자는 정상적인 설비의 운전이나 비상정지 장치에 대하여 숙달되어 있어야 하고, 이들 장치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주위에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, 정기점검을 통하여 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.
- (7) 비상정지 후 설비의 재가동 시에는 가동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.
  - (가) 운전자의 안전 확인
  - (나) 정지원인 확인 및 제거
  - (다) 고장난 기기의 수리
  - (라) 안전장치의 이상유무 확인 및 작동시험

## M - 97 - 2012

- (8) 정해진 적재량에 도달되면 자동으로 적재를 멈출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성능이 유지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
- (9) 저장설비 내의 출입은 관계자에 한 하도록 하며 관계자는 작업 시의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, 산소농도 등을 측정한 후이상이 없을 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, 필요시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다.
  - (가) 방호복
  - (나)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
  - (다)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
  - (라) 제전복
  - (마) 정전화
  - (바) 안전모
  - (사) 보안경
  - (아) 안전대
- (10) 저장설비 내부에서 작업 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고, 저장물 공급장치는 작동치 못하도록 잠긴 상태이어야 한다.
- (11) 개구부 및 열리는 부분 등에 사용된 키는 작업책임자가 관리한다.
- (12) 방폭설비는 이상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

## 4.3.2 공기압제어 저장설비

- (1) 안전밸브, 파열판 등 압력 및 진공을 제어하는 안전장치들은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
- (2) 가압방식으로 이송시키는 설비에 사용하는 공기 배출구의 필터는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